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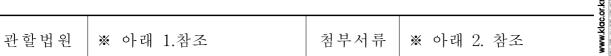
금전 공탁서(재판상의 보증)

-	공 탁 번 호	년 금	급 제 .	호 200	00	년0월0일	l 신청	법령조항	민사집행법 제280조	
공 탁 자	성 명 (상호, 명칭)	0	00		5]	(상호, 5				
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111111-11111111			피공탁자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222222-222222		
	주 소 (본점, 주사무소)			\cup		주 소 (본점, 주사무소)		ㅇㅇ시ㅇㅇ구ㅇㅇ길ㅇㅇ		
	전화번호				,	전화번	ৢঽ			
공 탁 금 액		(한글) 이백사십만원정			보 관 은 행		:H		은행 지점 	
		(숫자) 2,400,000원					0	20 11		
법원의 명칭과		○○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호 유체동산가압류								
사		원고 당사자 신청인 채권자			000			고 신청인 무자		
공탁 원인 사실	원인 3. 가압류 취소보증 8. 소송비용 담보									
비고(첨부서류 등) 담보제공명령서					□ 계좌납입신청					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○○○ 인(서명) 성명 인							인(서명)			
위 공탁을 수리합니다.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										
			년		월	일				
법원				<u> </u>		지원 공	탁관		(인)	
(영수증)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.										
년					월	일				
공탁금 보관은행(공탁관) (인))	

- ※ 1.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,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, 주소(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)를 기재하고 대리 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.
 - 2.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3.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'고유번호'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4.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[예 : 대한민국(소관청 : ○○○)]
- 5.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.
- 6.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



1.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

- ㅇ 재판상 보증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.
- 통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.

2. 담보공탁신청 제출서류 등

- 공탁서 2통【공탁소】
- 담보제공명령 등(공탁근거서류)
 - ① 재판상 보증공탁: 담보제공을 명한 재판서 1통(예, 가압류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사 본,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결정문사본)【민사신청과】
 - ② 영업보증공탁: 공탁근거서류(예, 선불카드신용카드업자의 공탁시 금융감독위원회 지 시문,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공탁시 중개업허가증 사본, 원자력손해배상 담보공탁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서)
 - ③ 납세담보공탁: 공탁근거서류(예, 국세,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위한 공탁시 세무서의 납세통지서 사본)
- 자격증명서 등(※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)
 - ① 법인의 대표자(대표이사 등)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:법인등기부등·초본
 - ② 법인 아닌 사단·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:정관(규약)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(대표자선임결의서)(※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 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)
 - ③ 법정대리인(미성년자의 친권자 등)이 신청하는 경우: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
 -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- ▷ 개인(변호사, 법무사 포함)인 경우 위임장(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)
 - ▷ 법인의 피용자(직원)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위임장(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)

■ 첨부서면의 생략

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





- 도장《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》